

인도문화교류연구소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동명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 인도문화교류연구소(이하 “본 연구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인도문화 관련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문화의 교류, 학문의 발전 및 교류, 연구 분위기 조성, 양국의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 연구소는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인력, 정보, 교류, 시설 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양국의 문화교류 및 우호증진
2. 학술연구 논문집 정기적 발간
3. 정기·부정기 학술세미나, 심포지엄, 초청강연회 개최
4. 국내외 타 인도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
5. 국내외 관련기관, 단체 및 업체의 연구용역 수행
6. 기타 연구소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분야

제4조(소재지) 본 연구소는 본 대학교 캠퍼스 내에 둔다.

제2장 조직 및 임원

제5조(연구부)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부를 둔다.

1. 기획부
2. 대외 협력부
3. 학술 연구부

제6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 본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소장 1인
2. 감사 1인
3. 각 연구부별 연구위원 1인

제7조(소장)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사항을 관장하며,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감사)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연구위원) 연구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및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
② 본 연구소에 선임연구원 및 상임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,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 (고문 및 자문위원) 본 연구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고문 및 자문위원은 국내외의 저명한 학계 및 산업체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12조(구성 및 회의)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과 감사, 연구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.

제13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
2. 본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
3. 본 연구소의 규정 개정 및 폐지
4. 연구원의 위촉,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4장 재정

제14조(재정) ① 본 연구소의 재원은 제3조의 사업에 의한 수익금, 교비지원금, 각종 연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본 연구소의 세출은 운영비, 연구용 기기구입 및 계획, 연구비 등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5조(예산 및 결산) ①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와 같다.

제5장 기타

제16조(해산) ① 본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본 연구소를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.

제17조(운영세칙)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